

1. 개정이유

본법 개정에 따라 지하공간 침수방지 시설의 지정과 유지 및 관리할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법률 제19837호, 2023.12.26. 공포, 2024.6.27.시행)하는 한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관련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고, 전체 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행여부를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20162호, 2024.1.30. 공포, 2024.7.31.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등록·변경·승계시 제출받는 서류를 실제 행정정보 이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류로 변경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평가 관리책임자 교육실시 방법 규정(안 제1조의3)

-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의 관련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교육 실시 방법 및 기한 규정
- 2)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 이수

나. 재해영향평가 이행상황 관리대장 제출 규정 마련(안 제1조의4)

- 1) 전체 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서면으로 소관사업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2) 사업시행자는 이행상황 관리대장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

다.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지정 및 유지·관리 사항 신설(안 제6조의4)

- 1)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한 침수방지시설을 정하고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 2)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함

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변경·승계시 제출받았던 서류 일부 변경

(안 제9조, 제10조, 제10조의3, 별지제5호, 별지제6호, 별지제6호의2)

-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있으나 실제 시스템에서는 제공하지 않아 현실에 맞게 변경
- 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변경·승계시 제출받았던 서류인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

마.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1조의7)

- 1)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법률용어 정비
- 2) 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당 용어에 적합한 '국가유산' 발굴조사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에 따른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 관리대장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조의7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의6 및 제4조의7을 각각 제4조의7 및 제4조의8로 하고, 제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6(침수방지시설과 유지·관리)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막이판
2. 역류방지 밸브
3. 배수펌프 및 집수정
4.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17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상 작동 여부
2. 수밀성(물의 침투, 흡수 및 투과를 막는 성질) 확보 여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그”를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그”를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사업자등록증명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를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31조의 제목 “(지역안전도 진단 등급 등)”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등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역안전도”를 “자연재해 안전도”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신청인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나목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3(관리책임자의 지정·통 보)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1조의3(관리책임자의 지정·통 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관리책임자는 지정된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u> <u>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에 따른 국가민 방위재난안전교육원</u> <u>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u>
제1조의4(이행상황 관리대장) ① (생 략) <u><신 설></u>	제1조의4(이행상황 관리대장) ① (현행과 같음) <u>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 관리대장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게 제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 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u> <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
제1조의7(협약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착공을 준비하기 위 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	제1조의7(협약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 ----- ----- -----

하기 위한 공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생략)
2. 문화재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3. (생략)

② (생략)

<신 설>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산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6(침수방지시설과 유지·

관리)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막이판

2. 역류방지 밸브

3. 배수펌프 및 집수정

4.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17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상 작동 여부

	2. 수밀성(물의 침투, 흡수 및 투과를 막는 성질) 확보 여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u>제4조의6</u> · <u>제4조의7</u> (생 략)	<u>제4조의7</u> · <u>제4조의8</u> (현행 제4조의6 및 제4조의7과 같음)
제9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u>사업자등록증</u>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생 략) 2. <u>사업자등록증</u> 3. · 4. (생 략) ③ (생 략) 제10조(대행자 변경 등록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신	제9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u>사업자등록증</u> 명 ----- ----- <u>사업자등록증</u> 및 <u>국가기술자격증</u>의 ----- -----. 1. (현행과 같음) 2. <u>사업자등록증명</u> 3.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대행자 변경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청서를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생략)

나. 사업자등록증

2. 3. (생략)

③ (생략)

제10조의3(대행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

---- 사업자등록증명 -----

---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사업자등록증명

2.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대행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

해야 한다. 1. (생략) 2. <u>사업자등록증</u> 3.·4. (생략) ③ (생략) 제31조(<u>지역안전도 진단 등급 등</u>)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2조의 2제1항에 따른 <u>지역안전도</u> 진단 결과에 대하여 특별자치시·특 별자치도·시·군·구별로 구 분하여 진단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u>술자격증의</u> ----- -----. 1. (현행과 같음) 2. <u>사업자등록증명</u> 3.·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u>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등 급 등</u>) ----- ----- <u>자연재해 안전도</u> ----- ----- ----- -----.
--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상호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설립일	
	주소 전화번호(FAX, E-mail):		
등록사항	업무 분야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 []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 []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업무 [] 1) 풍수해 부문 [] 2) 지진 부문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기술인력 총 () 명 기술자격자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학력·경력자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기술인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나. 기술인력의 재직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제26조의2에 따른 수수료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등록번호				
	명칭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FAX, E-mail)		
변경 등록 사항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변경 사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2.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재직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제26조의2에 따른 수수료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1. 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나. 사업자등록증명 2.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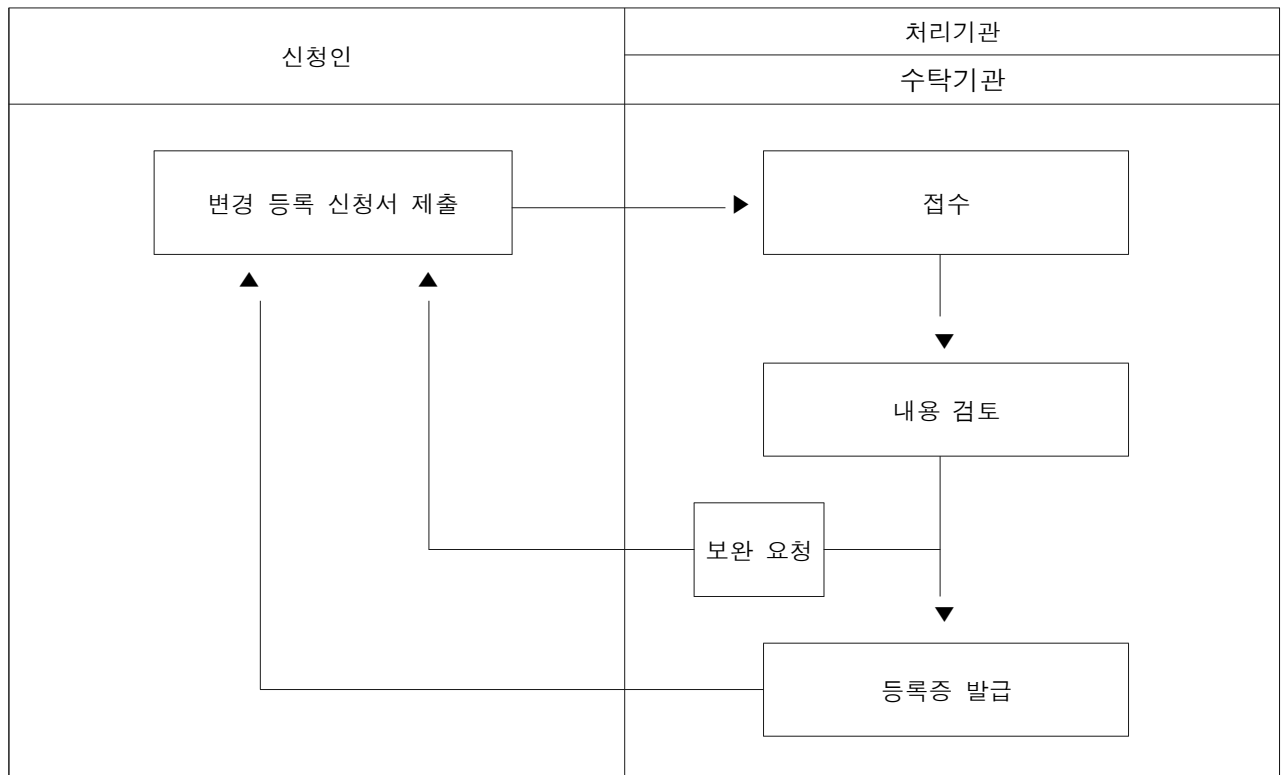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종전 대행자	등록번호	제 호	
	성명(명칭 또는 상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무소 소재지		
승계한 대행자	성명(명칭 또는 상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무소 소재지		
승계사유	[] 상속 [] 양도·양수 [] 분할·합병		
승계사유 발생일			

「자연재해대책법」 제4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분할·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기술인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나. 기술인력의 재직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수수료 없음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